

의과대학 기숙사 운영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학생 기숙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기숙사의 운영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3조(관리부서)

기숙사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학팀장이 실무를 관리하며 중요한 사항은 의과대학은 학생부학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5조(입사자격)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라야 한다.

제6조(입사생 선발기준) 입사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학년별 학업집중도를 고려하여 5, 6학년을 우선 전원 배정하고 3, 4학년 중 F학점 학생을 2순위로 신청자 전원 배정한다.
- ② 각 학기 지원자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각 학년별 배정비율을 정하며, 거리 및 성적을 환산하여 배정한다.
- ③ 입사생 선발기준은 성적 50%, 지역조건 50%로 정한다.
- ④ 학기중 입사자는 방학기간 입사를 포함하여 선발하며, 결원 발생시 신규지원자 선발기준을 준용하여 추가 입사자를 모집한다.
- ⑤ 가계곤란학생
 1.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수용인원의 5%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2. 가계곤란 입사 신청대상자는 가계곤란 70%, 성적 30%를 반영한다.
 3. 가계곤란 입사 신청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
 - 나. 지방세 과세증명서
 - 다.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라. 주민등록등본
- ⑥ 기숙사 입사보장으로 선발된 입학장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한다.
- ⑦ 동점자 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배정한다.
 1. 포트폴리오 제출
 2. 거리
 3. 성적
- ⑧ 선발된 자가 입사를 포기하였을 경우, 상기 제 1, 2, 3, 4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된 예비순위자를 입사자로 한다.
- ⑨ 학업성적은 입사신청 전년도(1, 2학기 평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복학자는 휴학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⑩ 선발기준의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

〈성적 50%〉

성 적	점 수
80% 이상	50
70% 이상	40
60% 이상	30
50% 이상	20
40% 이상	10

〈거리 50%〉

지 역	점 수
통학거리 1.5시간 이상	50
통학거리 1시간 이상	40
통학거리 0.5 이상	30
통학거리 0.5 이내	0

※ 해당학년 학생 수 기준

⑪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여 감점된 사생생활점수는 다음 기숙사 선정 심사 시 사생점수에 반영한다.

제7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및 보균자
4. 입사지정일 기숙사비 미납자
5. 기타 기숙사 입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경고처분)

사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처분 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지침 및 사생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

제9조(퇴사)

1.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및 방학 중에는 퇴사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을 제출하여 교학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방학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별도의 공고 기간 중에 교학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사처분 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 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사비)

1. 사생의 입사비 및 퇴사비는 다음에 의하여 수납 및 환불한다.

이 지침 제10조에 의거 퇴사조치 된 자는 환불받지 못한다.

구 분	1달 이내	2달 이내	3달 이내	4달 이내	방학기간
입사비	100%	75%	50%	25%	방학입사비
퇴사비	75%	50%	25%	없음	없음

2. 학기 중 입사 시 방학기간의 입사비도 포함하여 일괄 납부한다.

3. 교학팀에서 공지한 납부기간 내 입사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퇴사조치하며 대기자에게 입사기회를 부여한다. 단, 납부기간 내 미납사유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운영

제12조(사생대표) 입사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생대표를 둔다.

- ① 사생대표는 입사생을 대표하며,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숙사 건의사항을 교학팀과 협의한다.
- ② 대표선정 : 1년 이상 연속으로 기숙사에 거주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며 책임감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활동내용
 1. 사생수칙 위반자의 적발
 2. 휴게실의 환경관리상태 파악
 3. 샤워실과 화장실 등의 공용물품 고장여부 파악
 4. 기숙사 공사 등 공지사항 전달
 5.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교학팀과 협의를 통해 개선노력
- ④ 사생대표장학 : 기숙사비의 100%를 감면하며, 장학처리한다.<개정 2019. 8.1>

제13조(기숙사 운영)

-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숙사 지도교수와 교학팀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 기숙사 지도교수 : 의과대학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 ③ 기숙사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숙사 지도교수, 교학팀장, 교학팀 담당직원, 사생대표가 모여 안전을 논의 할 수 있다.
- ④ 기숙사 운영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4조(기숙사 관리)

- ① 기숙사는 수시로 점검한다.
- ② 정기점검은 하계, 동계방학에 교학팀, 시설팀, 총무팀 합동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1999.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05.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09.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1.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2.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5.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7.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지침은 2019. 8. 1일부터 시행한다.